

# Monthly Tax Newsletter

---

Issue 100 | October 2022

삼정KPMG 세무본부 TKC

# Contents

	Page
<b>소득법인세 분야</b>	<b>2</b>
• [판례]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 (국승)	
• [심판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의 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 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용)	
• [심판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예규] 주식 등의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외 여부	
• [예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b>재산소비세 분야</b>	<b>6</b>
• [판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국승)	
• [예규]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 [예규]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법상 양도소득인지 여부	
• [예규] 조특법 §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 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 §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 [예규]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 가액 등 포함 및 이자손실분 차감 여부	
<b>관세 분야</b>	<b>9</b>
• [심판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국내권리자(AAA)가 해외권리자(CCC Holdings)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소득법인세 분야

**[판례]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  
(국승)**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 [사안]** 소외인과 그 자녀들이 주주이고 부동산임대업과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A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08. 8. 19. B사에 390억원에 양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69억원을 지급받은 후, 2008. 8. 28. 그 사업 중 대부업 부문을 인적분할("이 사건 분할")하여 C사를 설립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합계 약 281.6억원의 자산을 C사에 이전함. 그 결과 분할 후 A사는 장부가액 약 43.7억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약 50.9억원의 자산을 보유하는 한편,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하여 분할 전 A사가 보유하던 약 341.8억원의 부채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음. 한편 소외인과 그 자녀들은 2008. 8. 26.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원고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다음 분할 후 2008. 10. 8. A사를 원고에 흡수합병("이 사건 합병")시켰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약 339.4억원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고, 그 결과 합병평가차익 약 295.3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로 분할 후 A사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등의 차액인 합병차익은 약 1억원에 불과하게 됨. 원고는 2008. 10. 28. B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고 매매잔금 121억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인 390억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인 약 339억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합병평가차익 중 합병차익의 범위 내에 있는 약 1억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피고는 A사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보고 구 국가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분할 전 A사의 장부가액인 약 43.7억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 [판단]** 원심은, A사의 주주인 소외인과 그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A사가 부담할 법인세를 줄이는 방안을 찾던 중 A사와 사업 목적도 다른 원고를 인수하여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을 하였고, 이로써 법인세를 대폭 줄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분할과 합병에 법인세 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까지 더하면 구 국가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심판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의 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조심 2021중5038, 2022. 9. 20.**

- [사안]** 청구법인은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 1. 5. 청구법인의 본사를 이전하였고, 2007. 4. 11. 본사 소재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에 의료용 제제 제조업(“추가업종”)을 추가하였으며, 추가업종의 종사인원을 신규채용(“쟁점인원”)하였음. 청구법인은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 제63조의 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본점(A공장) 및 B공장 근무인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 [판단]** 기획재정부는 본사이전 후 신규채용인원이 ‘지방이전 인원비율’에 포함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제도46012-11228, 2001. 5. 23.)하여 온 점, 대법원은 본사이전 후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판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38965 판결,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도 이와 관련한 기존의 해석을 번복)하였고, 조특법 제63조의 2는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 시 제10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 시에는 제10항을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본사의 경우에도 공장과 같이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은 경우에만 감면대상 소득으로 인정함으로써 본사의 지방이전 후에 새로 추가된 업종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는바,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 조특법 제63조의 2 규정의 문언상 본사이전 전부터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에 종사한 직원만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거두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사이전 후 추가업종에서 신규채용한 인원 또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본사이전 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을 법인의 전체 인원수 중 이전본사 근무인원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법인의 전체 인원수 가운데 지방이전 기여분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감면대상사업 소득을 계산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액감면율을 보완하여 조정(지방으로 이전한 인원이 적을수록 실효 감면율이 낮아지는 효과)하는 개념으로 보이는바(조심 2020전8301, 2021. 1. 13.), 법인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신규로 채용한 인원도 지방이전에 따른 기여분에 포함하는 것이 ‘수도권 외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굳세첨도 ‘본사이전 후 신규채용한 인원을 ‘지방이전 인원비율’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 예규(제도46012-11228 2001. 5. 23.) 생성 이후 감면비율 산정 시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사이전 후 추가업종에서 신규채용한 인원 또한 본사이전 감면소득 계산 시 ‘지방이전 인원비율’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1부6884, 2022. 10. 4.

**[사안]** 청구법인은 2018년 A토지(“쟁점토지”)를 B사에 일정금액(“쟁점매출액”)에 양도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가, 2019. 8. 22.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19. 12. 26. 소득처분된 대표자 상여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 10.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각 고지함. 2020. 11. 10. 처분청은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자 C에게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C는 이에 불복하여 2021. 2.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2021. 6. 28. 각하결정을 받았음. 청구법인은 2021. 7. 16. 쟁점매출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당초 ‘대표자 상여’에서 ‘기타’로 변경)을 구하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등의 사유가 없어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각하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는 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소득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거나, 과세관청이 동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예규]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 9. 28.**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함.

**[예규] 주식 등의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외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2. 9. 2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음.

**[예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서면-2022-법규소득-3558, 2022. 9. 29.**

신청법인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없음.

# 재산소비세 분야

**[판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국승)**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 [사안]** 원고들(별지1 기재)은 H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H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들의 보조참가인("참가인")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함. 위 원고들은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발급사분담금(위 원고들이 발급한 B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위 원고들이 발급한 B소지자의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옴. 위 원고들은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참가인에게 지급한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피고들에게 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이 사건 거부처분"). 한편, 원고들(별지2 기재)은 상표 라이선스 등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D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D의 사업을 운영하는 SS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D(이하 합하여 "D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여 왔음(위 각 분담금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분담금"). 한편 위 원고들은 참가인과 D사를 비롯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H법인인 E, G 및 P법인인 J("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역무 제공의 대가로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국제거래수수료,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긴급 현금서비스 등 기타수수료("이 사건 기타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음.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D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함("이 사건 부과처분").
- [판단]** 구 부가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참조). 한편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
- 원심은 원고들은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하므로 참가인의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의 국내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위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결제보증, 긴급 대체카드 및 긴급 현금서비스 등 이 사건 기타수수료의 대가인 역무는 주된 역무에 부수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예규]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2022. 9. 15.**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예규]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법상 양도소득인지 여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67, 2022. 9.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예규] 조특법 §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 §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2022. 9. 1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 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DB)이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동 자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예규]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 등 포함 및 이자손실분 차감 여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0, 2022. 10. 1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 [TKC 코멘트]

- 국세청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재산세과-359, 2011. 7. 27.).

# 관세 분야

[심판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국내권리자(AAA)가 해외권리자(CCC Holdings)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22관0103, 2022. 9. 15.

- [사안] 청구법인은 CCC그룹 담배브랜드의 국내 권리권자인 AAA와 완제품 담배의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3.부터 2017. 9. 28.까지 영국 소재 “BBB” 및 제3자로부터 완제품 담배 제조에 필요한 담뱃잎 및 포장재(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함 한편, AAA는 “CCC”와 브랜드 담배와 관련된 상표권 등의 권리자인 CCC Holdings와 라이선스계약(이라 “쟁점 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 내에서의 제품의 제조, 생산, 수입 판매, 마케팅, 유통과 관련된 상표 및 기술 등에 대한 권리 사용을 허여 받았으며 이에 쟁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음. 과거에는 쟁점 로열티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완제품 담배에 부착하는 상표에 대한 사용대가로 순 매출액의 OO를 지급하였으나, 2013. 4. 1. 위 상표권 계약에 “Innovation & Technology”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 권리사용료에 대한 요율을 9%로 변경하면서, 상표권 OO%, 기술·혁신 사용 대가 OO%로 구분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의 별도 전자담배 로열티 계약을 체결함. 처분청은 2018년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고, 2019. 1. 4. “혁신 및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쟁점 로열티)”가 담뱃잎 및 포장재의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 1. 10.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 로열티를 가산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음. 2021. 12. 21. 청구법인은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여 2022. 5. 17.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함.
- [판단] WTO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권고의견 4. 11.에서 ‘수입자가 수입물품(스포츠 의류)에 부착되는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입 물품의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자인 모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고, 수입물품의 판매계약에 로열티 지급에 대한 요건이 없으나 판매자와 모기업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이 로열티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인지’에 대하여 수입하기 위해 모 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이뿐만 아니라, 쟁점 로열티에는 담배의 제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CCC 그룹이 자사브랜드 담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CCC 그룹의 담배 제조 노하우에 따라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로열티와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청구법인은 CCC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함에 있어 CCC 그룹이 추구하는 제품의 품질 및 제조방식과 관련하여 라이센서가 수시로 제공 또는 승인한 사양·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라이센서가 승인한 표준품질의 자재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브랜드 기준 및 생산자재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로부터 생산자재를 구매하기 전 라이센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어 보이며, 쟁점물품과 쟁점 로열티의 거래당사자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있어 청구법인이 로열티의 지급주체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쟁점물품과 쟁점로열티 사이에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 [TKC 코멘트]

- 최근에 특히, 상표, 디자인, 저작물 등 무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이러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권리는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보통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는데, 관세 측면에서도 일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며, 이의 가산 여부를 검토할 때는 WTO 관세평가협정, WCO 권고의견, 관세 법령 및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검토하게 됨. 다만, WTO 관세평가협정에 과세요건에 대한 상세한 판단기준이 부재하고 우리나라 관세법에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권리사용료 가산여부는 과세관청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례에서의 “쟁점로열티의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로열티의 지급주체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쟁점물품과 쟁점로열티의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은 시사점이 큼. 실제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법인입장에서는 쟁점로열티를 수입물품에 가산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권리사용료의 가산 검토 자체를 간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거래구조가 복잡한 다국적 글로벌 기업일수록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구조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삼정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http://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